

2018. 9. 1. 제2차 경찰공무원(순경) 채용시험
- 일반공채(남·여), 101경비단, 경찰행정학과경채 -

수사

자료제공 : 이동진 교수

www.kpa.co.kr

1 수사실행의 5대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여러 가지 추측 중에서 과연 어떤 추측이 정당한 것인가를 가리기 위해서는 그들 추측 하나 하나를 모든 각도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원칙은 ‘적절한 추리의 원칙’이다.
- ② 수사관의 판단이 진실이라는 이유 또는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여 증명하여야 한다는 원칙은 ‘사실판단 증명의 원칙’이다.
- ③ 추측을 확인하는 작업인 동시에 또 다른 측면에서 새로운 자료수집이라고 할 수 있는 원칙은 ‘검증적 수사의 원칙’이다.
- ④ 수사실행의 5대 원칙에는 ‘수사자료 완전수집의 원칙’, ‘수사자료 감식·검토의 원칙’, ‘적절한 추리의 원칙’, ‘검증적 수사의 원칙’, ‘사실판단 증명의 원칙’이 있다.

해설 ▶ ① 여러 가지 추측 중에서 과연 어떤 추측이 정당한 것인가를 가리기 위해서는 그들 추측 하나 하나를 모든 각도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원칙은 ‘검증적 수사의 원칙’이다. 적절한 추리의 원칙이란 수집된 자료를 기초로 하여 합리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2 「검찰사건사무규칙」상 수사의 종결형식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혐의없음’처분을 한다.
- ② 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나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가 있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죄가안됨’처분을 한다.
- ③ 피의자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공소권없음’처분을 한다.
- ④ 고소사건에 관하여 고소인의 진술이나 고소장에 의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로서, 고소사실이 수사를 개시할 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혐의없음’처분을 한다.

해설 ▶ ④ 고소 또는 고발이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진술이나 고소장 또는 고발장에 의하여 혐의없음·죄가안됨·공소권없음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 ‘각하’처분을 한다(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제3항 제5호). ① 동규칙 제69조 제3항 제2호 ② 동규칙 제69조 제3항 제3호 ③ 동규칙 제69조 제3항 제4호

3 「경찰 내사 처리규칙」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익명 또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 명의의 신고·제보, 진정·탄원 및 투서로 그 내용상 수사단서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내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피혐의자 또는 참고인 등의 소재불명으로 사유해소 시까지 내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내사종결한다.
- ③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내사사건이거나 경합범으로 다른 사건과 병합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내사병합한다.
- ④ 진정내사 사건 처리 시 공람종결할 수 있는 사유로는 ‘무기명 또는 가명으로 한 경우’, ‘단순한 풍문이나 인신공격적인 내용인 경우’, ‘3회 이상 반복 진정하여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것과 같은 내용인 경우’등이 있다.

해설 ➡ ② 피혐의자 또는 참고인 등의 소재불명으로 사유해소 시까지 내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내사중지’한다(경찰 내사 처리규칙 제11조의2 제1항 제2호). ① 동규칙 제5조 ③ 동규칙 제11조의2 제1항 제3호 ④ 동규칙 제11조의2 제2항

4 변사체 검사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및 조산사는 사체를 검안하여 변사(變死)한 것으로 의심되는 때에는 사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형사소송법」상 변사자 검사의 주체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다.
- ③ 시체를 인수할 자가 없거나 그 신원이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변사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 ④ 변사체는 후일을 위하여 화장함을 원칙으로 한다.

해설 ➡ ① 의료법 제26조 ②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있는 시체가 있는 때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가 검시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22조 제1항). ③ 사법경찰관은 변사체를 검시한 결과 사망의 원인이 범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명백히 인정되었을 때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소지품 등과 같이 시체를 신속히 유족 등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시체를 인수할 자가 없거나, 그 신원이 판명되지 않은 때에는 시체가 현존하는 지역의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인도하여야 한다(범죄수사규칙 제37조 제1항). ④ 변사체는 후일을 위하여 매장함을 원칙으로 한다(범죄수사규칙 제37조 제3항).

5 「형사소송법」 및 「(경찰청)범죄수사규칙」상 압수·수색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수색한 경우에 증거물 또는 몰취할 물건이 없는 때에는 그 취지의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② 압수물이 있을 경우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기타 이에 준할 자에게 물건의 특징이 기재된 압수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③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검증조서 또는 실황조사서에 압수의 취지를 기재하여 압수조서에 갈음할 수 있다.
- ④ 압수물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을 때에는 소유권포기서를 제출 받아야 한다.

해설 ② 경찰관은 증거물 또는 몰수할 물건을 압수하였을 때에는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을 작성하고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기타 이에 준할 자에게 압수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범죄수사규칙 제119조 제1항). ① 형사소송법 제128조 ③ 범죄수사규칙 제119조 제3항 ④ 동규칙 제119조 제4항

6 「수사본부 설치 및 운영 규칙」상 수사본부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약취·유인 사건은 수사본부 설치대상 중요사건에 포함된다.
- ② 수사본부장과 수사부본부장은 지방경찰청장이 지명한다.
- ③ 수사본부장은 수사본부 수사요원을 지휘·감독하며, 수사본부를 운영 관리한다.
- ④ 수사본부 비치서류와 사건기록 사본의 보존기간은 범인을 검거하였을 경우에는 1년, 검거하지 못한 사건인 경우에는 공소시효 완성 후 3년으로 한다.

해설 ④ 수사본부의 비치서류와 사건기록 사본의 보존기간은, 범인을 검거하였을 경우에는 3년, 검거하지 못한 사건인 경우에는 공소시효 완성 후 1년으로 한다(수사본부 설치 및 운영 규칙 제22조 제3항). ① 동규칙 제2조 제1호 ② 동규칙 제8조 제2항 ③ 동규칙 제9조 제2항

7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수사 및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은 2월을 초과하지 못하고, 그 기간 중 통신제한조치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요건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2월의 범위 안에서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 있다.
- ㉡ ‘가입자의 전기통신일시’, ‘인터넷 로그기록자료’, ‘발·착신 통신번호 등 상대방의 가입자 번호’, ‘사용도수’, ‘이용자의 가입일 또는 해지일’은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사실확인자료”에 해당한다.
- ㉢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이란 대상이 되는 전기통신의 송·수신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하는 등의 행위도 포함한다.
- ㉣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허가신청은 각 피의자별 또는 각 피내사자별로 신청한다.

① ㉠㉡

② ㉠㉣

③ ㉡㉣

④ ㉡㉣

해설 ㉠㉢ 2개이다. ㉡ ‘가입자의 전기통신일시’, ‘인터넷 로그기록자료’, ‘발·착신 통신번호 등 상대방의 가입자 번호’, ‘사용도수’는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사실확인자료”에 해당하나, ‘이용자의 가입일 또는 해지일’은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자료”에 해당한다(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11호,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제6호). ㉢ 통신비밀보호법의 감청이란 전기통신의 송·수신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만을 의미하고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하는 등의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대판 2012.10.25, 2012도4644). ㉠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제7항. (헌법불합치, 2009헌가30, 2010. 12. 28. 통신비밀보호법(2001. 12. 29 법률 제6546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7항 단서 중 전기통신에 관한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은 2011.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한다.) ㉣ 동법 제6조 제2항

8 「수사긴급배치규칙」상 수사긴급배치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긴급배치를 사건발생지 지방경찰청의 전 경찰관서 또는 인접지방경찰청에 시행할 경우는 발생지 지방경찰청장이 발령한다.
- ② 긴급배치 종별에 따른 형사(수사)요원, 지구대, 파출소, 검문소 요원의 경력동원 기준은 갑호배치의 경우 가동경력 100%, 을호배치의 경우 가동경력 50%이다.
- ③ 사건발생 후 상당기간이 경과하여 범인을 체포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긴급배치를 생략할 수 있다.
- ④ 허위신고 또는 중요사건에 해당되지 않음이 판단되었을 때 긴급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해설 ② 긴급배치 종별에 따른 경력동원 기준은 갑호배치는 형사(수사)요원, 지구대, 파출소, 검문소 요원은 가동경력 100%, 을호배치는 형사(수사)요원은 가동경력 100%, 지구대, 파출소, 검문소 요원은 가동경력 50%이다(수사긴급배치규칙 제7조 제1항). ① 동규칙 제4조 제1항 제2호 ③ 동규칙 제6조 제1호 ④ 동규칙 제12조 제2호

9 「(경찰청)범죄수사규칙」 및 「지명수배 등에 관한 규칙」상 지명수배 및 지명통보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사법경찰관은 긴급사건 수배에 있어서 피의자의 성명 등을 명백히 하여 그 체포를 의뢰한 경우에는 지명수배를 하여야 한다.
- ② 검거된 지명수배자를 인수한 수배관서의 사법경찰관은 24시간 내에 체포 또는 구속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지명수배자를 수배관서가 위치하는 특별시, 광역시, 도 이외의 지역에서 검거한 경우에는 지명수배자를 검거한 경찰관서의 사법경찰관이 통지를 하여야 한다.
- ③ 지방경찰청장은 지명수배·지명통보를 한 후, 6월이 경과하여도 검거하지 못한 자들 중 강력범 등 중요지명피의자를 매년 5월과 11월 연 2회 선정하여 경찰청장에게 중요지명피의자 종합 공개수배 대상자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④ 경찰관은 소재발견한 지명통보자에 대하여 지명통보가 여러 건인 경우에는 법정형이 가장 중한 죄명으로 지명통보 사실 통지서를 작성하여 교부하고 지명통보자 소재발견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해설 ④ 경찰관은 소재발견한 지명통보자에 대하여 지명통보가 여러 건인 경우에는 각 건마다 지명통보 사실 통지서를 작성하여 교부하고 지명통보자 소재발견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범죄수사규칙 제180조 제2항). ① 동규칙 제173조 제2항 ② 동규칙 제174조 제6항 ③ 지명수배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

10 「범죄수법공조자료관리규칙」상 수법원지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수법범죄 피의자를 검거하였거나 인도받아 조사하여 구속 송치할 때에는 수법원지를 작성한다. 다만 불구속 피의자는 재범의 우려가 있더라도 작성하지 않는다.
- ② 경찰서장은 “수법·수배·피해통보 전산자료 입력코드번호부”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수법원지 1매를 작성한 경우 지방경찰청장을 거쳐 경찰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③ 사기, 횡령, 배임죄는 수법원지 작성 대상 범죄에 해당하나 폭행, 장물죄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
- ④ 수법원지 피작성자가 80세 이상이 되었을 때에는 수법원지만 폐기하고 전산입력 자료는 삭제하지 아니한다.

해설 ② 범죄수법공조자료관리규칙 제3조 제1항 ① 수범범죄 피의자를 검거하였거나 인도받아 조사하여 구속 송치할 때 작성한다. 다만, 불구속 피의자도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작성할 수 있다(동규칙 제3조 제1항). ③ 사기, 장물죄는 수범원지 작성 대상 범죄에 해당하나 횡령, 배임, 폭행죄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동규칙 제3조 제1항). ④ 수범원지 피작성자가 80세 이상이 되었을 때에는 수범원지를 폐기하고 전산 입력 자료는 삭제한다(동규칙 제12조 제1항 제2호).

11 유류품 수사의 착안점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 흥기 등의 경우 상해부위와 합치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은 '완전성'과 관련이 있다.
 ㉡ 범인이 유류품 및 그의 일부라고 인정할 만한 것과 동종의 물건을 소유하거나 휴대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은 '관련성'과 관련이 있다.
 ㉢ 범인이 범행시각에 근접하여 현장 및 그 부근에 있었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은 '기회성'과 관련이 있다.
 ㉣ 유류품이 범행 시와 동일한 상태로 보전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은 '동일성'과 관련이 있다.

① ㉠㉡

② ㉠㉣

③ ㉡㉣

④ ㉢㉣

해설 ㉡㉣ 2개이다. ㉡ 유류품과 범인과의 관계인 관련성에 대한 설명이다. ㉣ 유류품과 현장과의 관계인 기회성에 대한 설명이다. ㉠ 흥기 등의 경우 상해부위와 합치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은 유류품과 범행과의 관계인 '동일성'에 대한 설명이다. ㉢ 유류품이 범행 시와 동일한 상태로 보전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은 유류품과 범행시의 관계인 '완전성'에 대한 설명이다.

12 「(경찰청)범죄수사규칙」상 송치서류 편철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통신제한조치 집행으로 취득한 물건은 담당 사법경찰관리가 직접 압수물송치에 준하여 송치하여야 한다.
 ② 송치서류는 사건송치서, 의견서, 압수물 총목록, 기록목록, 그 밖의 서류 순으로 편철한다.
 ③ 그 밖의 서류는 중요도 순서에 따라 편철하고, 각 장마다 면수를 기입하여야 한다.
 ④ 의견서에는 각 장마다 면수를 기입하되, 1장으로 이루어진 때에는 1로 표시하고, 2장 이상으로 이루어진 때에는 1, 2, 3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해설 ① 범죄수사규칙 제192조 제8항 ② 송치서류는 사건송치서, 압수물총목록, 기록목록, 의견서, 그 밖의 서류의 순서로 편철한다(동규칙 제192조 제3항). ③ 그 밖의 서류는 접수 또는 작성순서에 따라 편철하고, 각 장마다 면수를 기입하여야 한다(동규칙 제192조 제4항). ④ 의견서에는 각 장마다 면수를 기입하되, 1장으로 이루어진 때에는 1로 표시하고, 2장 이상으로 이루어진 때에는 1-1, 1-2, 1-3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동규칙 제192조 제5항).

13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동시에 3명 이상의 피의자를 유치장에 입감시킬 때에는 경위 이상 경찰관이 입회하여 순차적으로 입감시켜야 한다.
- ② 형사범과 구류 처분을 받은 자, 19세 이상의 사람과 19세 미만의 사람, 신체장애인 및 사건관련의 공범자 등은 유치실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분리하여 유치하여야 한다.
- ③ 여성유치인이 친권이 있는 24개월 이내의 유아의 대동을 신청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 ④ 호송관은 피호송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피호송자마다 포박한 후 호송수단에 따라 2인 내지 5인을 1조로 하여 상호 연결시켜 포송하여야 한다.

해설 ③ 경찰서장은 여성유치인이 친권이 있는 18개월 이내의 유아의 대동(對同)을 신청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1. 유아가 질병·부상, 그 밖의 사유로 유치장에서 생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 2. 유치인이 질병·부상, 그 밖의 사유로 유아를 양육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 3. 유치장에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유아의 대동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범죄수사규칙 제12조 제2항). ① 동규칙 제7조 제1항 ② 동규칙 제7조 제2항 ④ 동규칙 제50조 제2항

14 시체의 현상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 각막은 안구질환 유무 및 체질, 환경에 따라 차이를 보이나, 사후 12시간 전후 흐려져서, 24시간이 되면 현저하게 흐려지고, 48시간이 되면 불투명해진다.
- ㉡ 시체굳음은 일반적으로 손가락·발가락 → 팔·다리 → 어깨관절 → 턱관절 순으로 진행된다.(Nysten 법칙)
- ㉢ 시체의 부패는 공기의 유통이 좋고, 온도는 20~30℃, 습도는 60~66%일 때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 ㉣ 고온·건조한 상황에서 시체의 건조가 부패·분해보다 빠를 때 나타나는 현상을 시체밀랍화라고 한다.
- ㉤ 백골화란 뼈만 남는 상태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소아시체는 사후 4~5년, 성인시체는 7~10년 후 완전 백골화 된다.

① ㉠㉡㉣

② ㉠㉢㉤

③ ㉡㉢㉣

④ ㉢㉣㉤

해설 ㉠㉢㉤ 3개이다. ㉡ 시체굳음은 일반적으로 턱관절 → 어깨관절 → 팔다리 → 손가락·발가락 순으로 진행된다(Nysten 법칙). ㉣ 고온·건조지대에서 시체의 건조가 부패·분해보다 빠를 때 생기는 현상을 미라화라고 한다. 시체밀랍화란 화학적 분해에 의해 고체 형태의 지방산 혹은 그 화합물로 변화한 상태, 비정형적 부패형태로 수증 또는 수분이 많은 지중(地中)에서 형성되는 현상을 말한다.

15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 피해자에게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면 검사는 10일 이내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 ㉡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간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며, “가정구성원”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포함된다.
- ㉢ “가정폭력범죄”란 가정폭력으로서 「형법」상 중체포, 존속협박, 상해,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인질강요 등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 ㉣ 피해자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가정폭력행위자인 경우 이를 고소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가정폭력행위자인 경우 또는 가정폭력행위자와 공동으로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다.

① ㉠㉡

② ㉡㉢

③ ㉡㉣

④ ㉢㉣

해설 ㉠㉢이다. ㉠ 「형법」상 중체포, 존속협박, 상해,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은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하나, 인질강요는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 ㉢ 피해자는 「형사소송법」 제224조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다(동법 제6조 제2항).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가정폭력행위자인 경우 또는 가정폭력행위자와 공동으로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다(동법 제6조 제1항). ㉡ 동법 제6조 제3항 ㉣ 동법 제2조 제1호, 제2조 제2호 가목

1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
- ② 경찰청장은 각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성폭력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피해자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 ③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보존하여야 한다.
- ④ 성폭력범죄에 대한 심리는 그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결정으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해설 ① 제2조제3호 및 제4호의 죄와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죄는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제2항). 따라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동법 제14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동법 제26조 제2항 ③ 동법 제30조 제1항 ④ 동법 제31조 제1항

17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상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LSD는 환각제 중 가장 강력한 효과를 나타낸다.
- ② LSD는 일부 남용자들의 경우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데도 환각현상을 경험하는 ‘플래시백 현상’을 일으키기도 한다.
- ③ GHB는 무색·무취·무미한 특징이 있고 소다수 등 음료에 타서 복용하며, 일명 ‘물뽕’이라고 불린다.
- ④ GHB는 근육강화 호르몬 분비효과가 있으며, 통상 사용 후 15분 후에 효과가 발현되어 3시간 동안 지속된다.

해설 ③ GHB는 무색무취로서 짙맛이 나는 액체로 소다수 등의 음료에 타서 복용하며 ‘물같은 히로뽕’이라는 뜻에서 ‘물뽕’이라고도 불리고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는 성범죄용으로 악용되어 ‘데이트 강간 약물(Date rape drug)’이라고도 불린다.

18 외사경찰 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주한미군지위협정(SOFA)’대상 피의자를 조사하는 경우 ‘합중국’의 정부대표가 참여하지 아니한 때에 피의자가 한 진술은 피의자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채택되지 아니한다.
- ② ‘대한민국 당국’이 살인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미군 피의자를 ‘합중국 통제구역’으로의 복귀 전에 체포한 경우 증거인멸·도주 등을 이유로 구속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때에는, ‘합중국 군당국’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피의자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믿을 적법한 사유가 없는 한 대한민국에 구금인도를 요청하지 아니한다.
- ③ 사법경찰관은 외국인 피의자의 체포·구속 시 별도 외국과의 조약에 따라 피의자 의사와 관계없이 해당 영사기관에 통보하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를 통보해야 한다.
- ④ 「출입국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상 법무부장관은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 ‘2천만원 이상의 국세·관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해설 ④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1. 형사재판에 계속(係屬) 중인 사람, 2.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3. 1천만원 이상의 벌금이나 2천만원 이상의 추징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 4. 5천만원 이상의 국세·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사람,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어 그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출입국 관리법 제4조). ① SOFA 협정 제22조 제9항 (사)에 관한 합의의사록 ② SOFA 협정 제22조 제5항 (다)에 관한 합의의사록 제2항 ③ 범죄수사규칙 제241조 제4항

19 「공직선거법」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대통령 선거 및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기간은 23일이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 선거의 선거기간은 14일이다.
- ③ 대통령 선거의 선거일은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경우 그 임기만료일전 7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이다. 선거일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속절 또는 공휴일인 때와 선거일 전일이나 그 다음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주의 수요일로 한다.

- ④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일은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경우 그 임기만료일전 5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이다. 선거일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속절 또는 공휴일인 때와 선거일 전일이나 그 다음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주의 수요일로 한다.

해설 → ①② 대통령선거의 선거기간은 23일,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의 선거기간은 14일이다(공직선거법 제33조 제1항). ③④ 동법 제34조 제1항·제2항

20 공무원 관련 범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국가공무원법」상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국가공무원법」상 감사원과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사립학교법」상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국가공무원이 아니므로, 감사원,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범죄 유형에는 뇌물, 알선수재, 공무원상 비밀누설, 국고 등 손실, 특수직무유기 등이 있다.

해설 → ③ 감사원,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사립학교법 제66조의3 제1항). ① 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2항 ② 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3항 ④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4조의3, 제5조, 제15조